

#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2007

경기도체육회



# 목 차

■ 대회 개요 / 취지, 일반사항, 시상 .....	3
■ 참가 요령 .....	12
1. 경 기 방 법 .....	12
2. 심판 및 경기규칙 .....	12
3. 채 점 방 법 .....	13
4. 순위결정방법 .....	13
5. 직장운동경기부 .....	14
6. 참 가 자 격 .....	16
7. 참 가 신 청 .....	17
8. 시·군 대표자 회의 .....	19
9.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	19
10. 기 타 사 항 .....	20
■ 경기종목별 참가요강 .....	21
1. 육 상 .....	23
2. 수 영 .....	26
3. 축 구 .....	27
4. 테 니 스 .....	28

5. 정 구	29
6. 배 구	30
7. 탁 구	31
8. 복 싱	32
9. 역 도	33
10. 씨 림	34
11. 유 도	35
12. 검 도	36
13. 궁 도	37
14. 배드민턴	38
15. 태 권 도	39
16. 볼 링	40
17. 골 프	41
18. 보디빌딩	42
19. 우 슈	43
20. 사 격	44
<b>■ 참가요강 변경사항</b>	<b>45</b>
<b>■ 경기운영 내규</b>	<b>49</b>
<b>■ 채점 내규</b>	<b>59</b>

# 대 회 개 요

## 취 지

도민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우의와 체위를 향상시켜 향토 체육의 발전과 경기인구의 저변확대로 신인 선수를 발굴하며,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도 체육진흥에 이바지한다.

## 일반사항

1. 대회기간 : 2007. 5. 16(수) ~ 18(금) 3일간
2. 개최지 : 수원시
3. 주 최 : 경기도체육회
4. 주 관 : 수원시, 수원시체육회
5. 후 원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6. 경기종목 : 20개 정식종목 (시범종목 1 포함)

## 7. 경기종목 및 종별

(● 시범종목 및 종별)

번호	구분 종목		일반부		고등부		비고
			남	여	남	여	
1	육	상	○	○	○	○	
2	수	영	○	○	●	●	
3	축	구	○	○			
4	테	니스	○	○			
5	정	구	○	○			
6	배	구	○	○			
7	탁	구	○	○			
8	복	싱	○				
9	역	도	○				
10	씨	름	○				
11	유	도	○				
12	검	도	○	●			
13	궁	도	○				
14	배	드민턴	○	○			
15	태	권도	○	●			
16	볼	링	○	○			3인조4게임 시범
17	골	프	○				
18	보	디빌딩	○				
19	우	슈	○				
20	사	격 (트랩)		●			

# 시 상

## 1. 종합시상

- 1부 대항 : 종합성적 1, 2, 3위에 우승기 및 우승배 수여.
- 2부 대항 : 종합성적 1, 2, 3위에 우승기 및 우승배 수여.

## 2. 종목별 시상

- 종목별 1, 2, 3위에 우승배 및 상장 수여.

## 3. 개인 및 단체 시상

- 개인 및 단체팀 1, 2, 3위에 상장 및 메달 수여.

## 4. 성취상 시상

- 전년도 종합성적 대비 현연도 종합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선수단  
(1부·2부에 1, 2, 3, 위 성취상배 수여)

## 5. 모범선수단상

- 대회 및 경기장 질서에 가장 모범적인 선수단(1부, 2부)에 1, 2, 3위 모범상배 수여.

## 6. 입장상

- 개회식 입장 질서를 가장 잘 지킨 시·군선수단(1부, 2부)에 1, 2, 3위 입장상배 수여.

## 7. 경기단체 질서상

- 경기장 질서 및 대회운영을 잘한 경기단체에 질서상배 수여.

## 8. 식전행사

### 《개 회 식》

가. 일 시 : 2007. 5. 16(수) 11:00

나. 장 소 : 수원종합운동장

다.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분)		
11 : 00	11 : 01	1	• 개 식 통 고	사 회 자
11 : 01	11 : 50	49	• 시·군선수단 입장	(밴드 주악)
11 : 50	11 : 54	4	• 국 민 의 례	수원시립합창단 학생연합합창단
11 : 54	11 : 55	1	• 개 회 선 언	도체육회 부회장
11 : 55	11 : 57	2	• 대회기 게양	(승리의 노래 합창)
11 : 57	12 : 02	5	• 성 화 점 화	성화 최종주자
12 : 02	12 : 05	3	• 환 영 사	수원시장
12 : 05	12 : 08	3	• 대 회 사	도 지 사
12 : 08	12 : 11	3	• 격 려 사	도의회 의장
12 : 11	12 : 14	3	• 축 사	경기도교육감
12 : 14	12 : 17	3	• 선수대표 선서	선수대표(남·여)
12 : 17	12 : 20	3	• 경기도의 노래	수원시립합창단 학생연합합창단
12 : 20	12 : 25	5	• 기수단 퇴장	

## 라. 시·군 선수단 입장 순서

1. 안 산 시    2. 광 주 시    3. 성 남 시    4. 김 포 시
5. 고 양 시    6. 이 천 시    7. 부 천 시    8. 구 리 시
9. 용 인 시    10. 양 주 시    11. 안 양 시    12. 안 성 시
13. 남양주시    14. 포 천 시    15. 의정부시    16. 의 왕 시
17. 평 택 시    18. 오 산 시    19. 시 흥 시    20. 하 남 시
21. 광 명 시    22. 여 주 군    23. 화 성 시    24. 양 평 군
25. 파 주 시    26. 동두천시    27. 군 포 시    28. 과 천 시
29. 가 평 군    30. 연 천 군    31. 수 원 시

## 마. 입장 행진대형 편성 요령

- 1) 입장대형 1개 제대로 편성
- 2) 인원 자율편성 (50명~100명)
- 3) 기본모형 (61명 편성기준)

- 임원단위대 ----- 16명 (1+3열×5오)
- 여자단위대 ----- 15명 (3열×5오)
- 남자단위대 ----- 30명 (3열×10오)

## 바. 개회식 입장 요령

- 1) 경의 표시는 본부석 앞 제1표기선에서 부터 제2표기선까지로 한다.  
(거리 20미터)
- 2) 단위대 지휘자는 제1표기선에서 제2표기선까지 자연스럽게 행진하면서 시·군별로 통일된 동작으로 경의를 표시하며 통과한다.
- 3) 태극기는 사열하지 않는다.
- 4) 체육회기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 5) 대회기는 총지휘자가 제1표기선에서 경례를 하면 기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 6) 시·군 선수단 기수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 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 사. 시·군 선수단 복장

- 1) 시·군 선수단 복장은 시·군별로 통일한다.

## 아. 입장시 행진대행



## 자. 정열시 요령

- 1) 선수단 정열시 앞 사람과의 거리는 1미터를 유지하며 옆 사람과의 거리는 20센티미터를 유지한다.
- 2) 입장선수단의 거리는
  - (가) 표지판 수와 시·군 기수 → 5미터
  - (나) 시·군 기수와 총지휘자 → 5미터
  - (다) 총지휘자와 단위대 → 3미터
- 3) 가맹경기단체 기수단은 본부석을 통과하여 반대편 중앙선에서 4열이 2열로 변하면서 좌측과 우측으로 갈라져 표시된 선에 정렬한다.
- 4) 시·군 선수단은 본부석을 통과하여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진입할 때 표지판수와 선수는 입장하되 기수는 정하여진 위치에서 멈춘다.

- 5) 시·군 선수단은 단위대별로 입장이 완료되면 지휘자가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 6) 시·군 선수단 입장이 완료되면 태극기와 체육회기는 본부석 밑으로 퇴장한다.
- 7) 표지판수, 시·군 체육회기 기수, 가맹경기단체 기수는 기봉의 하단을 지면에 대고 “쉬어” 자세를 취한다.
- 8) 대회기 기수는 대회기 계양대 앞에서 기폭을 팽팽하게 잡고 부동자세를 취한다.

#### 차. 국기에 대한 경례

- 1) 내빈과 관중은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일어나 국기를 향한다.
- 2) 선수단은 총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뒤로 돌아서서 전원 거수경례 한다.
- 3) 기수는 국기를 향한 다음 기를 45°도 굽혀 경례한다.

#### 카. 퇴장 요령

- 1) 대회 표지판수는 정면으로 퇴장한다.
- 2) 시·군 선수단 및 기수단은 본부석 중앙선을 깃 점으로 좌측은 좌측문으로 우측은 우측문으로 퇴장한다.

#### 타. 개회식 입장 단위대 집합 요령

- 1) 시·군 선수단은 개회식 당일 10:00까지 운동장 직1문 앞 광장에 집합하여 입장요령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다.

## 《폐 회 식》

가. 일 시 : 2007. 5. 18(금) 17:30 (예정)

나. 장 소 : 수원체육관

다.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분)		
17 : 30	17 : 31	1	• 개 식 통 고	• 사 회 자
17 : 31	17 : 35	4	• 성 적 발 표	• 임 원 장
17 : 35	17 : 55	20	• 시 상	• 대 회 장
17 : 55	17 : 59	4	• 폐 회 사	• 대 회 장
17 : 59	18 : 02	3	• 대 회 기 전 달	• 수 원 시 장 → 대 회 장 → 안 산 시 장
18 : 02	18 : 05	3	• 환 송 사	• 수 원 시 장
18 : 05	18 : 06	1	• 폐 회 선 언	• 부 대 회 장
18 : 06			• 시·군 선수단 퇴 장	• 이 별 의 노 래 합 창

## 참가요령

### 1. 경기방법

- 가. 각 종목별 1부·2부 시·군대항전으로 한다.
- 나. 경기진행은 종목별로 5개시·군 이상이 참가 하여야 경기를 실시하며, 1부·2부 혼성경기는 실시하지 않는다.
- 다.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단체경기 및 개인·단체경기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seed)는 개최지 시·군에만 배정한다.
- 라. 경기방법은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경기 종목의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 마. 1부·2부 구분 기준 : 인구 기준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 1) 개최지가 속한 부는 15개 시·군
  - 2)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 16개 시·군

### 2. 심판 및 경기규칙

- 가. 심판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 나. 각 종목별로 위원장 및 심판부원의 ID카드를 착용케 하여 경기운영의 신뢰성을 확립한다.
- 다. 종목별 경기운영은 해당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 라. 종목별 경기단체에서는 우천시를 대비하여 차선책 등 경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채점방법

- 가. 채점은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중 채점내규에 의거 한다.
- 나. 기권·몰수·불출장한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경기 몰수는 당해 경기단체가 하되 채점 여부는 당해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도민체전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다.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frac{\text{1부·2부별 득점합계}}{\text{종별·체급별·세부종목별 득점합계}} \times \frac{\text{당해 1부·2부의}}{\text{종별·체급별}} \times 100 = \frac{\text{당해}}{\text{시·군의}} \text{종합득점}$$

- 라. 종합채점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채점한다.
- 마. 우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하여 배점한다.
- 바. 본 대회에서 시범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순위 결정방법

- 가. 1부·2부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한다.
- 나. 1부·2부별 종합득점이 동점인 경우
  - 1)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2)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3)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4) 3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경기자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 팀은 2007. 1. 31. 까지 영입 및 창단한 경우 참가할 수 있다.

※ 단,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당해년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입한 선수에 대해서도 참가자격이 허용되며, 도내 또는 타시·도 구분 없이 기본점수(19개 정식 종목 이외 종목)와 전국체전 메달 획득 점수가 부여됨 (※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

2) 단일소속(직장운동경기부) 인원으로만 구성(단일팀)이 되었을 경우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검도, 궁도, 배드민턴, 볼링, 골프 등 10개 종목)

3) 직장운동경기부와 혼성(일반) 인원으로 구성(팀) 시 출전할 수 있다.

(해당종목 : 육상, 수영, 복싱, 역도, 씨름, 유도, 태권도, 보디빌딩, 우슈 등 9개 종목)

4)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학업을 위하여 야간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직장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5) 도민체전 출전 후 전국체전을 타 시·도로 출전한 직장팀 선수는 차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시·군(청,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19개 정식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없음.

(나) 전국체전 입상선수 : 가산점 배점 (※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

2) 19개 정식종목 이외 하계·동계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나) 전국체전 입상선수 : 가산점 배점.

※ 육성점수 배점표

구 분		육성 점수 배점		비 고	
		기본 점수 (19개 정식종목 제외)	전국체전 출전선수 가산점(전 종목)		
개인	1위	80점	80점		
	2위		40점		
	3위		20점		
	4위이하		10점		
개인 단체 및 단체종목	1위		80점	120점	
	2위			60점	
	3위			40점	
	4위이하			10점	

3) 육성점수의 상한선인 4,000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4,000점을 초과시 최고 시·군의 점수 비율로 육성점수를 배점 한다.

⇒ 비율배점방법 : 기본점수(상한선 4,000점) + 메달점수 = 합산점수

(합산점수가 4,000점을 초과시, 최고 시·군의 점수 기준으로 육성점수를 배점함)

<예시>

시·군	육성점수(기본점수 + 메달점수)			합산점수	득점비율 (66.67%)
	기 본 점 수		메달점수		
	총 점 수	상한선 적용 (4,000점)			
A	5,000	4,000	2,000	6,000	4,000
B	3,800	3,800	1,800	5,600	3,734
C	3,600	3,600	1,600	5,200	3,467
D	3,400	3,400	1,400	4,800	3,200

## 다. 구비서류

- 1) 재직증명서 1부
- 2) 당해 연도 1월~3월 봉급명세서 1부 (지출결의서 포함)
- 3)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4)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부 1부 (도민체전 참가신청마감일 까지)
- 5) 타 시·도 영입선수는 전년도 전국체전 참가신청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포함)
- 6) 증빙서류는 원본 1부만 각각 분리하여 제출할 것.  
(19개 정식육성종목 1부, 19개 이외 육성종목 1부)

## 6.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서 아마투어 선수에 한함.

나. 금번 대회에 만 18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18세 미만 기준 - 1989. 3. 1일 이후 출생자)

다. 고등학교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1) 육상·수영종목 고등부 선수는 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 2)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육상·수영종목 선수는 출신 중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 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일반부에 참가 할 수 없다.

라. 금번대회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본적지는 2004. 2. 28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 한다.  
다만, 전적의 경우 2004. 2. 28일 이후부터 2006. 2. 28일 사이에 경기도 내에서 전적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본적지로 참가 할 수 있다.

- 2) 주소지는 2006. 2. 28일 이전부터 대회참가일까지 주민등록이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 3) 군인 및 일반대학생 선수와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2006-2007) 현역 선수는 본적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을 경우에 해당 시·군으로 참가 할 수 있다.
- 3)-1 상무 팀 소속 군인은 타 시·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우 참가할 수 없다.
- 4) 타 시·도 실업선수는 본적지와 주소지 시·군으로 참가 할 수 없다.
- 5) 아래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6) 2개 시·군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가 이중 신청되었을 경우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시·군으로 참가한다.  
선수 1명의 출전동의서를 2개 시·군 이상이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선수의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 7)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회 출전 금지 중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8) 동일인이 1개 경기 이외에 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예) 유도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등 타 종목에 참가할 경우

## 7.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 2007년 4월 6일(금) 14:00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부 운영과

다. 신청요령

- 1)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 2) 참가신청서 주소란에 본적 또는 현주소를 기재할 것.  
(비고란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인지를 명확히 기재할 것)
- 3) 개인경기종목의 참가신청서 작성시 세부종목별 참가표시를 (“○”)  
참가신청서 마감 이후에는 정정 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정확히 기재 요망.  
(참가신청서는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필히 다운받아)하여 작성 제출)

라. 방 법 : 시·군별 책임자가 직접 제출한다.

마.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1) 참가신청서
  - (가) 원본 1부 (참가신청서에 구비서류 첨부)
  - (나) 사본 18부 (참가신청서만)
- 2) 구비서류
  - (가) 고등부(육상·수영)에 참가하는 선수
    - 학교장 발행의 재학증명서 1통
    - 경기체육고등학교 재학생 : 중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나) 군인, 일반대학생, 현역선수가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
    - 본적지 참가자 : 호적초본 1통
    - 주소지 참가자 : 주민등록초본,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 (다)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
    - 본적지 참가자 : 호적초본 1통
    - 주소지 참가자 : 주민등록초본 1통
  - (라) 구비서류 보완은 필히 대진추첨 개시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8. 시·군 대표자회의

가. 일 시 : 2007. 4. 25 (수) 14:00 (예정)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 7층 중회의실

다. 토의안건

- 1)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경기장 질서 확립
- 2) 대진추첨 및 기타사항

## 9.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07. 4. 7(토)~20(금) (14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부 운영과

다. 조 치 : 참가신청 마감 후 열람기간 동안 시·군 책임자는 타 시·군의 참가신청서를 사전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이를 조사 처리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참가자격에 대한)는 일체 처리하지 않음.

단,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게임 몰수)

라. 열람확약서 제출

1) 일 시 : 2007. 4. 20(월) 15:00까지

2) 장 소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부 운영과

## 10. 기타사항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이 처리하되 그 외의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처리는 해당 시·군에서 조치한다.

스포츠 상해보험은 시·군 선수단별 가입하여야 함.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 1. 육 상

## 1. 종별 및 경기종목

구분	성별	종 별	세 부 경 기 종 목	종목수
트랙	남	고 등 부	100m, 200m, 400m, 1,500m, 5,000m, 400mR, 1,600mR	7
		일 반 부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400mR, 1,600mR	8
	여	고 등 부	100m, 200m, 400m, 1,500m, 5,000m 400mR, 1,600mR	7
		일 반 부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400mR, 1,600mR	8
필드	남	고 등 부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4
		일 반 부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4
	여	고 등 부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4
		일 반 부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4
마라톤	남	일 반 부	단축마라톤(10Km)	1
			노장 단축마라톤(5Km)	1
	여	일 반 부	단축마라톤(10Km)	1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 3. 참가인원

가. 감독, 주무, 코치 외 각 시·군별 1인 2종목 이내 1종목 2인 이내

나. 단축마라톤은 각 시·군별 5명 이내

다. 노장 단축마라톤은 각 시·군별 3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트랙, 필드의 경기진행은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나. 마라톤의 경기진행은 1부, 2부를 구분치 않고 진행한다.

(1부, 2부를 구분해서 채점)

다. 노장 마라톤 출전선수 참가자격

(1957년 만50세부터 1942년 65세 사이의 출생자)

라. 시·군 단체전경기로 제한 시간 내 완주한 선수의 순위로 결정

※ 마라톤경기 제한시간

남자일반부 (10Km) - 45분

여자일반부 (10Km) - 55분

노장일반부 ( 5Km) - 23분

### 5. 채점방법

가. 트랙·필드, 마라톤을 각 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하여 분리 채점한다.

나. 트랙, 필드는 세부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배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다. 마라톤 경기의 채점은 제한 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 하위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제한 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채점대상은 되나 0점이 되며, 최하위 시·군이 된다.

즉 0점의 시·군이 2개 시·군일 경우 최하위가 2개 시·군이므로 배점 3점부터 1점씩 가산 배점함.

## 2. 수 영

### 1. 종별 및 경기종목

종 목		고등부(시범)	일반부(대학생 포함)
		남·녀 공통	남·녀 공통
경 영	자 유 형	50m, 100m	50m, 100m
	평 영	50m, 100m	50m, 100m
	접 영	50m, 100m	50m, 100m
	배 영	50m, 100m	50m, 100m
	혼 계 영	200m	200m
	계 영	200m	200m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각 시·군별 1명 2종목 이내,  
1종목 2명 이내

4. 경기방법 : 예선전·결승전으로 실시한다.

5. 기 타 : 계영 및 혼계영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별도 표시 없이 참가하는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 6. 채점방법

가. 세부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한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배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6 점

나.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에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다. 고등부는 시범으로 채점하지 않는다.

### 3. 축 구

####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8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경기

나. 1회전부터 준결승까지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한다.

다. 결승전 무승부 시 연장전 실시, 연장전도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한다.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 4. 테니스

###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2명 이상 4명 이내

4.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단체전 (2단식 1복식)  
(단식, 단식, 복식 순서로 경기함)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 5. 정 구

###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국제식 3복식 2단식 3선승제

- 복식 : 7회 게임

- 단식 : 5회 게임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 6. 배 구

###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 3. 참가인원

가. 남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2명 이내

나. 여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5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남자 - 6인제, 여자 - 9인제

나. 토너먼트식 경기 (3판 2승제)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 7. 탁 구

###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극동식 5단 2복 - 11점 5세트, 3세트 선승제)

나. 경기진행 시간이 20:00시가 경과할 경우 잔여경기는 익일 시행

5. 기 타 :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니폼을 뒷면 중앙에 각자 성명(한자)을  
다음 규격으로 필히 부착할 것.

▶ 규격 :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 색상 : 바탕 흰색, 글자 검정색

(참고 : 부착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을 금지함)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 8. 복      싱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체    급

체    급		중    량	비    고
1	라 이 트 플 라 이 급	48kg까지	
2	플    라    이    급	51kg까지	
3	밴            텀    급	54kg까지	
4	페            더    급	57kg까지	
5	라    이    트    급	60kg까지	
6	라 이 트 웰 터 급	64kg까지	
7	웰            터    급	69kg까지	
8	미            들    급	75kg까지	
9	라 이 트 헤 비 급	81kg까지	
10	헤            비    급	91kg까지	
11	슈 퍼 헤 비 급	+91kg이상	

3.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만 34세 연령제한 참가(기준 : 1973년 2월 28일 이후 출생자)

다. 경기도복싱연맹에 등록된 선수(선수증 소지자)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각 체급 1명

5. 경기방법 :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팀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 9. 역      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      급

	체      급	체      중	비      고
1	56 kg 급	56 kg 까지	
2	62 kg 급	62 kg 까지	
3	69 kg 급	69 kg 까지	
4	77 kg 급	77 kg 까지	
5	85 kg 급	85 kg 까지	
6	94 kg 급	94 kg 까지	
7	105 kg 급	105 kg 까지	
8	+ 105 kg 급	105 kg 초과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각 체급 2명(각 시·군에서는 총 8명 이내에서 1체급에 2명까지 신청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5. 경기방법 : 인상 및 용상 경기로 구분 실시하되 합계기록으로 채점한다.
6. 채점방법 : 체급별 참가자 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8위까지만 채점 하되 인상과 용상의 합계기록만 채점한다.  
(단, 인상과 용상 경기의 채점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합계배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 10. 씨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급 및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는 아래 표의 인원

체 급	경 량	중 량 급	계
체 중	85 kg 이하	85.1 kg 이상	
인 원	5 명 정 선 수 3명 후 보 2명	6 명 정 선 수 4명 후 보 2명	11 명 정 선 수 7명 후 보 4명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무승부일 경우 양 선수 중 체중이 가벼운 선수를 승자로 하며, 체중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 모든 선수는 자기 신청체급에 한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2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2 점	11 점	9.5 점	5.5 점	2.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4 팀

## 11. 유 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체급별 정선수 1명
4. 체 급

체 급	체 중	인 원
엑 스트 라 라 이 트 급	-60kg 급	각 체급별 1명
하 프 라 이 트 급	-66kg 급	
라 이 트 급	-73kg 급	
하 프 미 들 급	-81kg 급	
미 들 급	-90kg 급	
하 프 헤 비 급	-100kg 급	
헤 비 급	+100kg 급	

### 5.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단체전
- 나. 모든 선수는 자기 신청체급에 한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 다. 경기시간은 5분 단위로 한다.
- 라.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도복 앞면 왼쪽에는 소속을 뒷면 중앙에는 성명을 필히 부착할 것.  
(도복은 청색, 백색 두 가지를 준비하되 대한유도회가 공인하는 유도복을 착용하여야 함)

###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팀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 12. 검      도

###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시범)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7명 이상 9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무승부일 경우 양 팀의 대표전(3분)을 하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제한 시간 없이 단판 승부로 한다.

5. 채점방법 : 채점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2 팀

## 13. 궁 도

1. 종 별 : 일반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회원증을 소지한 자

다. 남·여 혼성 참가 가능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7명 이내(후보 2명 포함)

4. 경기방법

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나. 단체경기로 하되 7명이 참가하여 상위 5명의 성적합계로 순위를 정한다.

다. 시·군별로 1명씩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되 1명이 5순(1순 5발)을 발사한다.

라.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에 참가한 전 선수의 기록에 따라 1, 2, 3위를 정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개인순위 3위 까지 배점한다.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 14. 배드민턴

##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이상 6명 이내

##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전종별 : 3단식 2복식 - 3선승제)

나. 경기진행 시간이 20:00시가 경과할 경우 잔여경기는 익일 시행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 15. 태 권 도

### 1. 종 별

- 가. 남자일반부
- 나. 여자일반부(시범)

### 2. 체 급

체 급		남 자	여 자 (시범)	비고
1	핀 급	54kg까지	47kg까지	
2	플 라 이 급	54kg초과~58kg까지	47kg초과~51kg까지	
3	밴 텀 급	58kg초과~62kg까지	51kg초과~55kg까지	
4	페 더 급	62kg초과~67kg까지	55kg초과~59kg까지	
5	라 이 트 급	67kg초과~72kg까지	59kg초과~63kg까지	
6	웰 터 급	72kg초과~78kg까지	63kg초과~67kg까지	
7	미 들 급	78kg초과~84kg까지	67kg초과~72kg까지	
8	헤 비 급	84kg초과	72kg초과	

### 3. 참가자격

- 가. 협회에서 인정한 유단자
- 나.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4. 참가인원 : 각 체급별 선수 1명

5.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개인전

6. 경기시간 : 3회전으로 하고, 1회 경기시간 2분, 중간휴식 30초로 한다.

7.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팀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 16. 볼 링

### 1. 종 별

- 가. 남자일반부
-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6명 이내

### 4. 경기방법

- 가. 단체전 5인조 4게임으로 실시한다.
  - ※ 단체전 3인조 4게임은 시범으로 실시한다.
- 나. 1부·2부를 구분해서 경기를 한다.

### 5. 채점방법

- 가. 단체전의 최하위 1부·2부를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 나. 1부·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 17. 골 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프로페셔널 참가자 제외(프로선수, 골프교습 등 대가 및 보수를 받고 있는 자)

※ 대한골프협회 아마추어 자격규칙 제1조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

4. 경기방법 : 1부·2부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가. 1개팀 구성은 4명으로 하고, 매일 3명의 최저 스코어를 합산한다.

나. 스트로크 플레이어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다.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 경기 선수 중 기록순위에 따라 1, 2, 3위를 결정한다.

라. 참가선수가 3명 미만일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경기용 사용구는 영국 R and A와 미국 골프협회에서 승인된 국제공인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1부와 2부를 1점으로 하며,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 18. 보 디 빌 딩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 급

체 급		일 반 부	비고
1	플 라 이 급	60 kg 까지	
2	밴 텀 급	65 kg 까지	
3	라 이 트 급	70 kg 까지	
4	웰 터 급	75 kg 까지	
5	라 이 트 미 들 급	80 kg 까지	
6	미 들 급	85 kg 까지	
7	라 이 트 헤 비 급	90 kg 까지	
8	헤 비 급	90 kg 이상	

4.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총 8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각 체급 3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 5. 경기방법

- 가. 경기는 세계보디빌딩연맹과 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규칙에 의해 실시함.
- 나. 월체는 한 체급만 인정 (상체는 인정되나 하체는 불가)
- 다. 자유포즈 음악은 공동 음악으로 한다.
- 라. 계측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6. 채점방법

- 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채점한다.
- 나. 체급별 8위까지의 입상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 3명 이상이 8위 이내 입상한 경우 전원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19. 우 슈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종목
  - 가. 투로 : 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 나. 산수 : 5체급(-52kg, -56kg, -60kg, -65kg, -70kg)
4. 참가인원
  - 가. 투로 : 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 1) 감독, 주무, 코치의 시·군별 4명 이내
    - 2) 세부종목별 1명이 참가하며 한 세부종목에 한하여 2명이 참가할 수 있음.
  - 나. 산수 : 코치 외 체급별 1명
5. 경기방법 : 대한우슈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 투로(장권전능, 태극권전능, 남권전능)와 산수경기에 배점된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한다.
  - 가. 투로(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종목의 채점은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하며, 차하위 시·군의 선수가 해당 순위를 승계토록 하여 채점한다.
  - 나. 산수종목의 채점은 채점내규에 의해 배점한다.

예) 10명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팀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 20. 사      격

1. 종      별 : 일반부(시범)
  
2. 참가자격
  -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 나. 남·녀 혼성도 참가 가능
  
3. 참가종목 : 트랩(개인·단체)  
  
※ 개인전은 별도 실시하지 않음.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
  
5. 경기방법 : 대한사격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 시범종목은 채점 제외

# 참가요강 변경사항



##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변경사항

부문	종 전	변 경	비 고
참 가 자 격	○ 상무팀 소속 군인이 타 시·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더라도 본적 및 주소지 요건이 갖춰질 경우 출전 가능	○ 상무팀 소속 군인이 타 시·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한 경우 출전 자격 제한	자격변경
직 장 운동부	○ 영입 및 창단기한을 전년도 12. 31까지	○ 영입 및 창단기한을 당해 연도 1. 31까지	기준변경
개 최 종 목	○ 우수(남자부) : 시범종목	○ 우수(남자부) : 정식종목 ○ 검도(여자부), 태권도(여자부) - 시범종목	종별확대
경 기 행	○ 탁구·배드민턴 - 경기진행 시간제한 없음	○ 탁구·배드민턴 - 경기진행 시간이 20:00시가 경과할 경우 20:00시 이후의 잔여 경기는 익일 시행	진행변경
경 기 일 정	○ 수영, 역도, 궁도 - 1부 1일, 2부 1일씩 2일	○ 수영, 역도, 궁도 - 1부·2부 혼합 2일	
육 성 점 수	○ 기본점수 : 1인 50점 ○ 메달점수 - 개인 (금50, 은30, 동20, 4위이하 10) - 단체·개인단체 (금80, 은50, 동20, 4위이하 10)	○ 기본점수 : 1인 80점 ○ 메달점수 변경 - 개인 (금80, 은40, 동20, 4위이하 10) - 단체·개인단체 (금120, 은60, 동40, 4위이하 10) ※ 기본점수(상한전 4,000) + 메달점수 = 합산점수 단, 합산점수가 4,000점을 초과시, 최고 시·군의 점수기준으로 육성점수를 배점 함.	점수상향 및 비율배점

부문	종 전	변 경	비 고
구 비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부 : 구비서류 없음</li> <li>○ 직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부, 급여명세서 (지출결의서 포함), 타 시·도 영입선수는 경기실적 증명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등(초)본 및 주민등(초)본 등 구비서류 추가</li> </ul> </li> <li>○ 직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당해연도 1~3월 급여명세서와 급여지출결의서), 타 시·도 영입선수는 경기실적증명서</li> </ul> </li> </ul>	서류변경
이 의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일체 처리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 신청 기간 마감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일체 처리하지 않음 단,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게임몰수)</li> </ul>	자격강화
입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기준 : 애드벌룬, 폭죽, 동물, 구조물(다각 입체형 및 동·인력장치 일체), 사열대 앞지·정체</li> <li>○ 허용기준 : 홍보현수막 및 기, 인형(1인용), 밴드, 고적대, 풍물놀이, 홍보풍선, 색종이, 색테이프, 기타 2인 미만(1인)이 활용할 수 있는 용구</li> </ul>	입장상, 모범선수단상, 성취상 시상 대상 제외
입장식 시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회식</li> </ul>	시상식 변경

# 경 기 운 영 내 규



# 경기운영내규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경기도체육대회규정 등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경기운영

**제2조 (경기진행)** ①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이라 한다)의 모든 경기는 당해 경기단체 책임 하에 이를 진행한다.

② 대회본부는 대회기간 중 해당경기 단체가 경기운영을 잘못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경기 참가자들이 경기장 질서를 크게 문란시켜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회 운영위원의 결의로 해당경기의 모든 경기일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종목은 당해 연도 도민체전에서 실시하지 않은 종목으로 간주하여 종합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 (경기규칙)** 도민체전의 경기는 당해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하되 제3장과 같이 운영한다.

**제4조 (경기일정)** 도민체전의 종목별 경기일정은 해당 경기단체가 작성하며 본회가 이를 결정한다.

## 제3장 경기방법

**제5조 (경기방법)** 도민체전의 경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기록경기

가. 개인기록 경기 : 육상·수영(경영)·역도

나. 개인점수 경기 : 보디빌딩

다. 단체 및 개인점수 경기 : 볼링·골프

라. 단체 및 개인기록 : 궁도

## 2. 토너먼트 경기

가. 단체경기 : 축구·배구

나. 개인경기 단체전 : 테니스·정구·탁구·검도·배드민턴

다. 개인체급 경기 : 복싱·씨름·유도·태권도·우슈

**제6조 (단체경기 시드배정)**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한다)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개최지팀에 배정하되 별지 1의 위치에 배정한다.

**제7조 (개인경기 시드배정)** 토너먼트경기로 진행되는 개인경기는 대회개최지 선수에만 시드를 배정하며 시드는 단체경기 종목과 같이 1의 시드 위치에 배정한다.

**제8조 (대진추첨)**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은 시드를 배정한 후 시·군지부 대표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9조 (경기진행순서)** 토너먼트 경기의 경기진행 순서는 별지 대진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승패결정)** 토너먼트 경기에 있어서 동위자 순위전(3·4위전, 5·6위전)을 하지 아니한다. 무승부일 경우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해 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 제4장 경기기록 관리

**제11조 (경기기록 보고)** 도민체전의 모든 경기기록은 가맹단체별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당해 경기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책임자가 확인·서명하고 대회본부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기록관리는 가맹경기단체별로 한다.

## 제5장 심판 및 소청

**제12조 (심 판)** 도민체전의 경기심판은 경기단체의 심판규정에 의하되 그 경기단체가 지정한 심판원이 담당한다.

**제13조 (소 청)** 도민체전규정의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 하였거나 기타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민체전 운영위원회가 처리한다.

소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민체전 운영위원회 개최시에는 시·군지부 임원 2인(시·군 관계공무원 1, 종목별 팀감독 1)과 당해 경기단체 심판장만이 참석한다.

**제14조 (소청판결)** 도민체전운영위원회의 판결은 최후 판결이며, 판결에 대한 이의는 제출할 수 없다.

## 부 칙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토너먼트 경기순서 및 시드 배정 】

▶ 범례 : 1은 시드번호, A, B, C...는 추첨 표시

### [ 범례 ]

- 시드 : 1
- 추첨 번호 : A, B, 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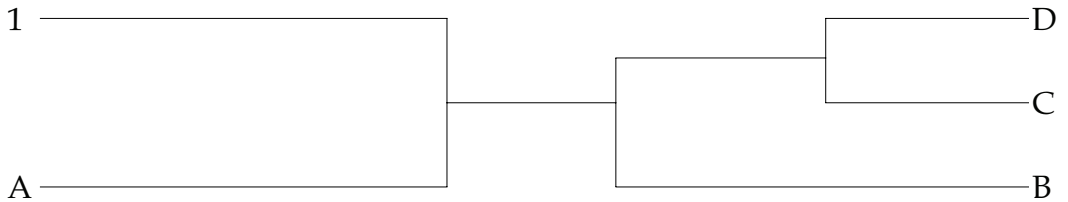
( 3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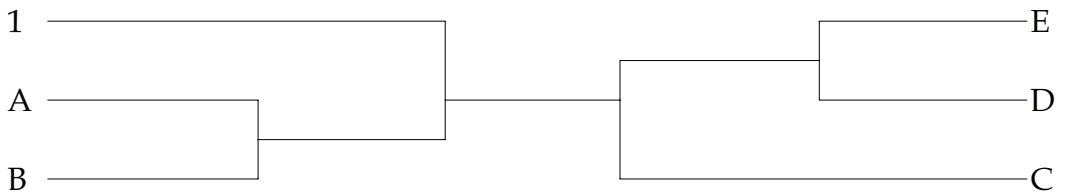
( 4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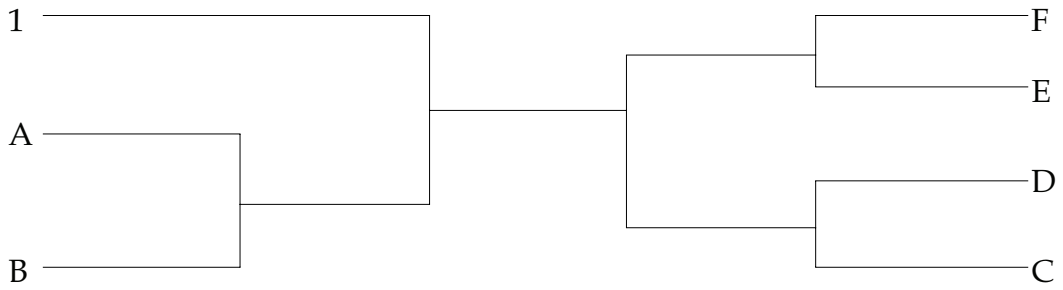
( 5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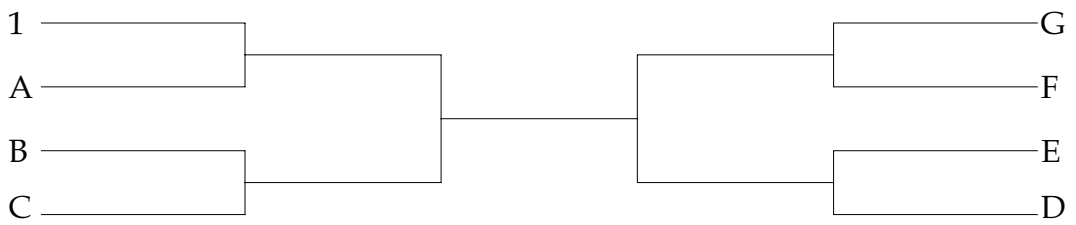
( 6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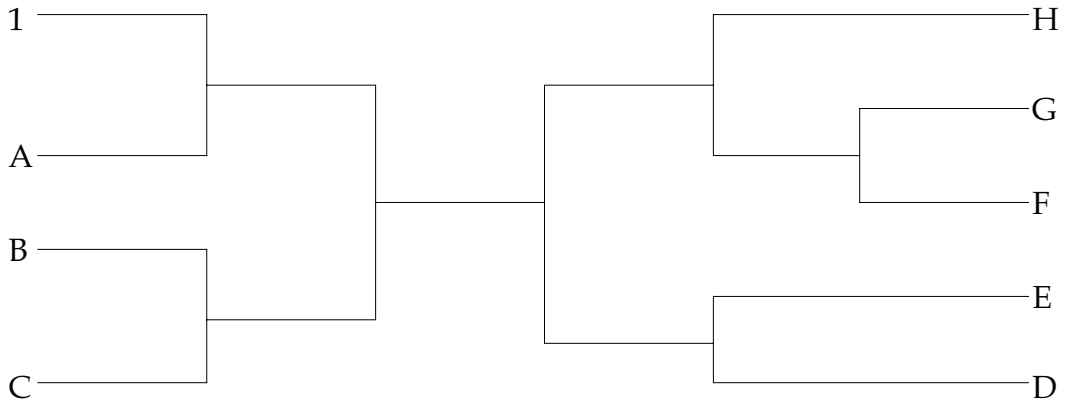
( 7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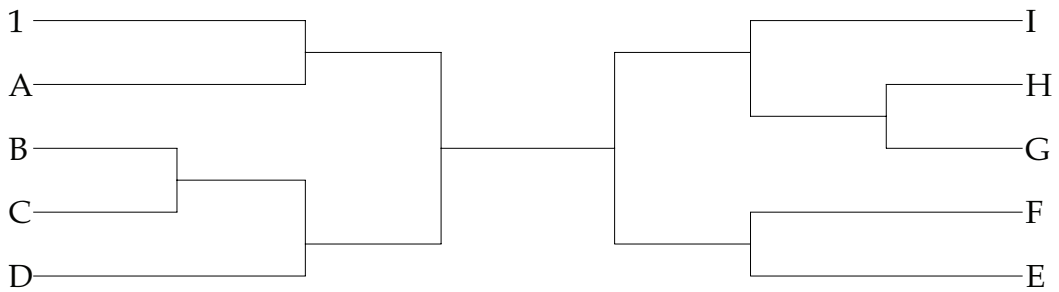
( 8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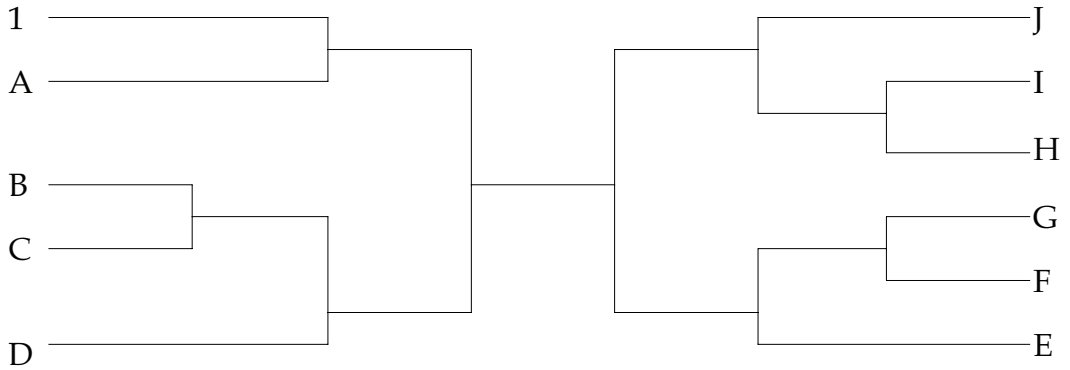
( 9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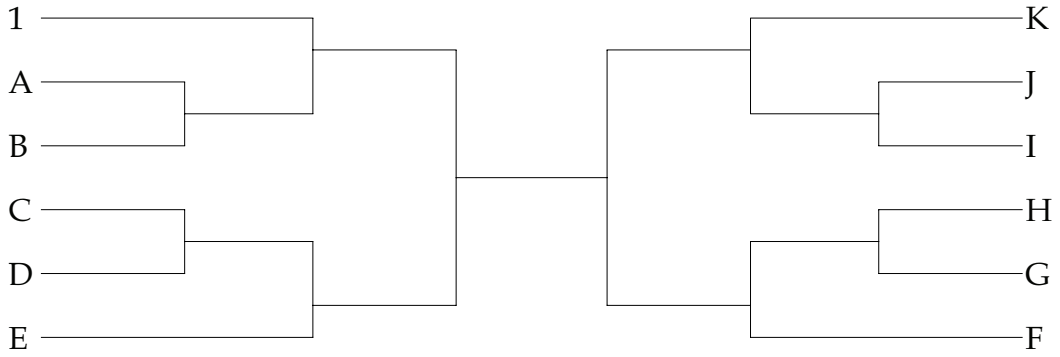
( 10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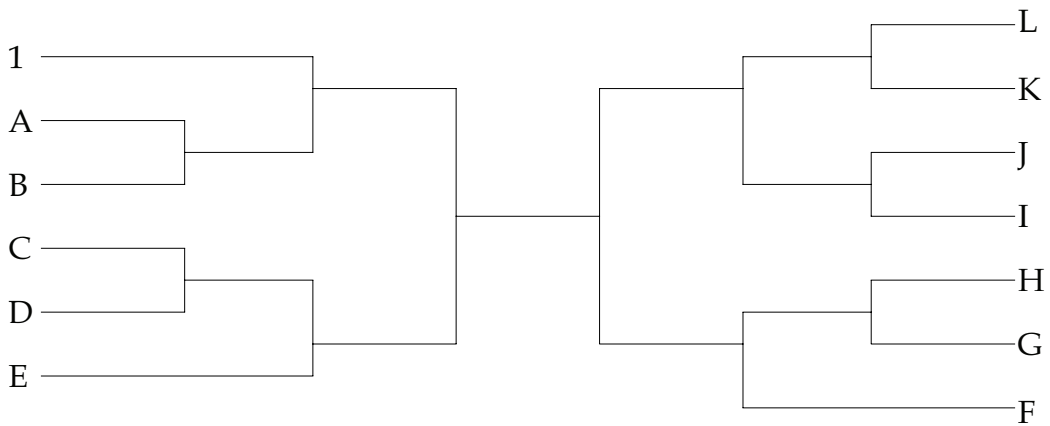
( 11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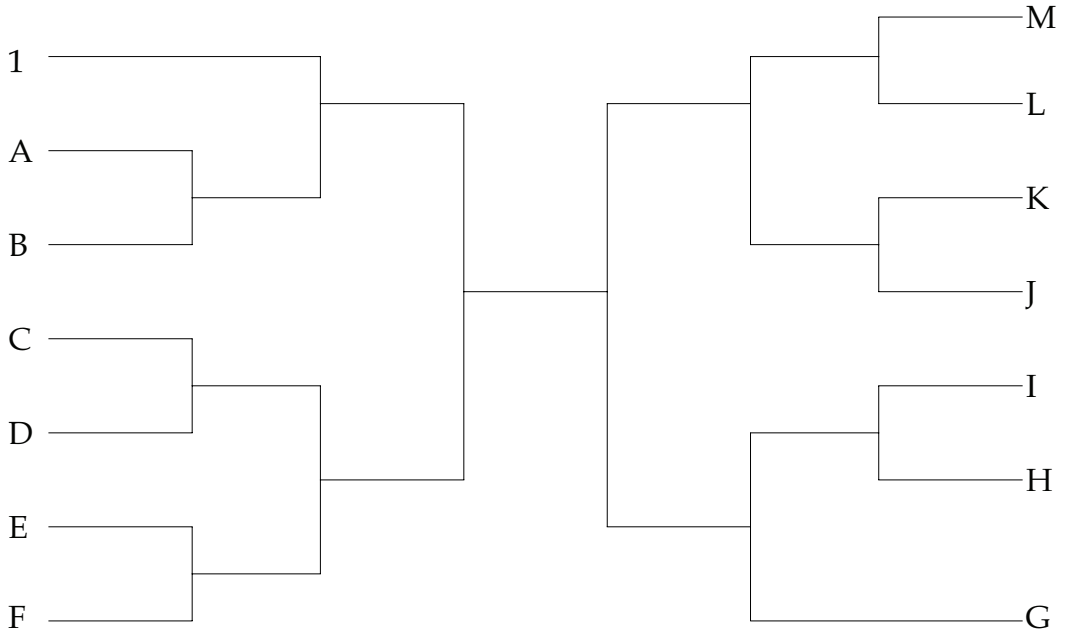
( 12개팀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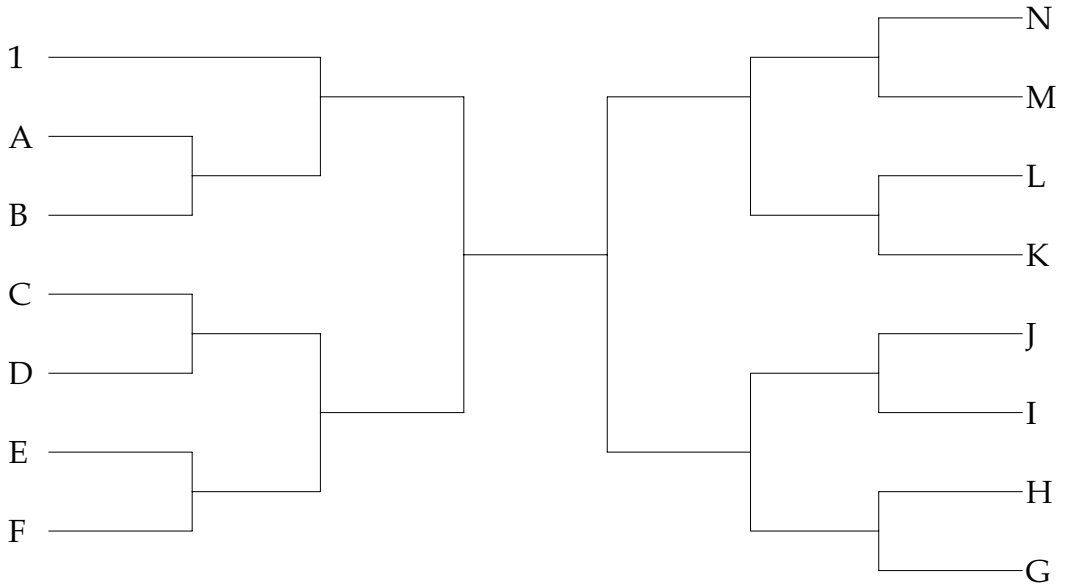
( 13개팀 참가 )



( 14개팀 참가 )



( 15개팀 참가 )





# 채 점 내 규



# 채 점 내 규

##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내규는 경기도체육대회 시·군별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 방법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채 점

제2조 (종합순위 결정) 1부·2부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한다.

제3조 (경기부문의 종합득점)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 5입 한다.

$$\frac{\text{1부·2부별 득점합계}}{\text{종별·체급별·세부종목별 득점총계}} \times \frac{\text{당해 시·군의 종별}}{\text{체급별 획득점수}} \times 100 = \text{당해 시·군의 종합득점}$$

- ▶ 설명 : ① 1부, 2부 득점합계는 당해 경기부문에 참가한 시·군의 수에 따라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 ② 종별, 체급별, 세부종목별 득점의 총계는 경기부분에서 종별(남일, 여일, 고등부) 또는 체급별(핀급, 플라이급), 세부종목별(100m, 200m 등)로 획득한 점수의 시·군별 총계를 말함.
- ③ 당해 시·군의 종별, 체급별, 세부종목별 획득점수는 경기부문내에서 당해 시·군이 종별 또는 체급별 세부종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제4조 (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① 시·군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시·군이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순위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5조 (기권·몰수·불출장 채점)** 기권·몰수·불출장한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경기 몰수는 당해 단체가 하되 채점여부는 당해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토너먼트 경기의 채점)** ① 토너먼트 경기의 종별(체급별) 채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팀수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17 위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8	1	8	1	7	2	5.5	4	2.5				
9	"	9	"	8	"	6.5	"	3.5	1	1		
10	"	10	"	9	"	7.5	"	4.5	2	1.5		
11	"	11	"	10	"	8.5	"	5.5	3	2		
12	"	12	"	11	"	9.5	"	6.5	4	2.5		
13	"	13	"	12	"	10.5	"	7.5	5	3		
14	"	14	"	13	"	11.5	"	8.5	6	3.5		
15	"	15	"	14	"	12.5	"	9.5	7	4		
16	"	16	"	15	"	13.5	"	10.5	8	4.5		
17	"	17	"	16	"	14.5	"	11.5	"	5.5	1	1
18	"	18	"	17	"	15.5	"	12.5	"	6.5	2	1.5
19	"	19	"	18	"	16.5	"	13.5	"	7.5	3	2

**제7조 (육상종목의 채점)** 육상종목은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① 채점방법 : 트랙·필드, 마라톤 경기에 배점된 점수를 각 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하여 분리 채점한다.

1. 트랙·필드 경기의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배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 마라톤 경기의 채점기준

- 제한 시간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 제한 시간내에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채점대상은 되나 0점이 되며, 최하위 시·군이 됨. 즉, 0점의 시·군이 2개 시·군일 경우 최하위가 2개 시·군이므로 배점 3점부터 1점씩 가산.

**제8조 (수영종목 채점)** 수영종목은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① 채점방법 :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한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배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②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제9조 (역도종목 채점)** 역도종목은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① 채점방법 : 체급별 참가자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8위까지만 채점하되 인상과 용상의 합계기록으로만 채점한다. 다만, 인상과 용상경기의 채점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배 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제10조 (궁도종목 채점)** 궁도종목의 채점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와 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개인순위 3위까지 배점한다.

(1위 : 3점, 2위 : 2점, 3위 : 1점)

**제11조 (볼링종목 채점)** 볼링종목의 채점은 최하위 1부와 2부를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채점한다.

**제12조 (골프종목 채점)** 골프종목의 채점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1부와 2부를 1점으로 하며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제13조 (보디빌딩종목 채점)** 체급별 참가자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8위까지만 채점하되 1개 시·군 2명 이상이 8위 이내 입상한 경우 전원 채점한다.

## 토너먼트 경기종목 채점조건표

등위 팀수	1위		2위		3위		5위		9위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2 팀	1	2	1	1						
3 팀	1	3	1	2	1	1				
4 팀	1	4	1	3	2	1.5				
5 팀	1	5	1	4	2	2.5	1	1		
6 팀	1	6	1	5	2	3.5	2	1.5		
7 팀	1	7	1	6	2	4.5	3	2		
8 팀	1	8	1	7	2	5.5	4	2.5		
9 팀	1	9	1	8	2	6.5	4	3.5	1	1
10팀	1	10	1	9	2	7.5	4	4.5	2	1.5
11팀	1	11	1	10	2	8.5	4	5.5	3	2
12팀	1	12	1	11	2	9.5	4	6.5	4	2.5
13팀	1	13	1	12	2	10.5	4	7.5	5	3
14팀	1	14	1	13	2	11.5	4	8.5	6	3.5
15팀	1	15	1	14	2	12.5	4	9.5	7	4
16팀	1	16	1	15	2	13.5	4	10.5	8	4.5

## 경기종목 및 종별

(● 시범종목)

번호	구분 종목		일반부		고등부		비고
			남	여	남	여	
1	육	상	○	○	○	○	
2	수	영	○	○	●	●	
3	축	구	○	○			
4	테	니스	○	○			
5	정	구	○	○			
6	배	구	○	○			
7	탁	구	○	○			
8	복	싱	○				
9	역	도	○				
10	씨	름	○				
11	유	도	○				
12	검	도	○	●			
13	궁	도	○				
14	배	드민턴	○	○			
15	태	권도	○	●			
16	볼	링	○	○			
17	골	프	○				
18	보	디빌딩	○				
19	우	슈	○				
20	사	격		●			